

 국토교통부	보도참고자료		
	배포일시	2019. 7. 16.(화) / 총 1매(본문1)	
담당 부서	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보험팀	담당자	·과장 이대섭, 팀장 윤종빈, 사무관 조숙현 ·☎ (044) 201-4760, 4761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음주운전에 대한 보험금 구상액 상향 방안은 충분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.

□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, 음주 사고시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금액*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구상액의 상향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

*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: 인적피해 건당 300만원, 물적피해 건당 100만원

□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.

< 보도내용(7.16, 뉴스원) >

◆ 음주사고 가해자 부담금 올린다...“연내 개정”

- 보험사 구상권 청구액 최대 400만원... 국토부 개정 추진, 하반기 내 시행
규칙 개정 목표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보험과 자동차보험팀 조숙현 사무관(☎ 044-201-476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